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경일 관련 역사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등 처벌〉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88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개호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3. 6.
3. 회 부 일 : 2026. 3.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고 그 숭고한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된 상징임. 그러나 최근 3·1절 등 국가적 기념일을 전후하여 틱톡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독하는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하여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경의를 표하는 듯한 영상을 조작하거나,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외모를 비하·조롱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반면, 이토 히로부미나 이완용 등 친일 인사를 찬양하는 반사회적·반인륜적 게시물까지 가세하며 국경일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국가의 존엄성까지 위협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악의적인 행위를 제지하는 데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음. 실제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되어 단순 조롱이나 희화화는 처벌하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보호 대상을 생존 인물로 한정하고 있어 고인에 대한 모독 행위는 경찰 내사조차 불가능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정 삭제 등 소극적인 조치에만 의존할 뿐,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제재는 전무한 상태임.

이에 동 법률 내에 국경일의 역사적 의미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관련 역사적 인물을 모욕·조롱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직접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AI 기술 등을 악용한 무분별한 역사 왜곡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2차 가해를 근절하고, 국경일의 숭고한 가치를 수호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인물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 신설).

나.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 신설).

다.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조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적 인물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와, 국경일 관련 역사적 인물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인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인물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생성형 AI,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신 설>	제5조(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생성형 AI,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모욕)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생성형 AI,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을 뿐,¹⁾ 국경일의 역사적 의미 또는 관련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독립운동가 등을 조롱·희화화하거나, 역사적 인물의 모습·음성 등을 조작한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²⁾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제3조 삭제

- 2) 세계일보, “‘뭔데 이 아저씨’…도 넘은 독립운동가 조롱, 왜 처벌 못하나”, 2026.04.10.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410513337>

능으로 제작된 콘텐츠는 실제 자료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고 단기간에 복제·확산될 수 있어,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삭제·차단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한편,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사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 및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각각 처벌하고 있음.³⁾ 이에 따라 사망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는 「형법」 제308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조롱·희화화·욕설 등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모욕적 표현은 사자에 대한 모욕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현행 「형법」으로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여 국경일 관련 허위조작 정보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악의적 모욕행위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국경일의 역사적 의미와 관련 인물의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입법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행위 유형	처벌수준		비고
	개정안	현행법(형법)	
허위사실 유포	5년이하 징역	허위사실 유포 처벌규정 無 <허위사실 적시 + 명예훼손시> · 생존인: 5년이하 징역 · 사자: 2년이하 징역	(개정안) · 명예훼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만으로도 처벌 ·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보다 처벌 강화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이하 징역	· 생존인: 2년이하 징역 · 사자: 처벌규정 無	(개정안) · 사실적시 사자명예훼손 처벌 신설
모욕	1년이하 징역	· 생존인: 1년이하 징역 · 사자: 처벌규정 無	(개정안) · 사자모욕죄 처벌 신설

※ 처벌수준의 경우 징역형 기준으로 작성(자격정지, 벌금형 생략)

다만, 형벌규정의 신설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보호대상과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인물”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경일과 직접 관련된 사건·인물만을 의미하는지, 독립운동가 외에 제헌절·개천절·한글날 등 모든 국경일 관련 사건·인물까지 포함하는지 조문상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형벌법규는 처벌대상과 행위태양을 국민이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⁴⁾ 보호대상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⁵⁾ 등 기존 법률에서 정한 범주와 연계하거나, 국경

4)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상 처벌대상 행위와 형벌의 내용을 국민이 예견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6헌바96 결정).

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인물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4조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처벌대상과 면책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안 제4조는 특정인의 명예훼손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 또는 인물에 관한 허위사실의 유포 자체를 처벌하려는 규정으로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별도로 처벌하는 입법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⁶⁾

다만 역사적 사실에 관한 표현에는 객관적·구체적 사실뿐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해석·평가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기존의 통설과 다른 역사해석이나 특정 인물에 관한 비판적 의견까지 허위사실 유포

5)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죄의 처벌대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처벌대상을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에 관한 허위정보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 또는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등을 위한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개정안도 역사적 사실에 관한 연구·교육·언론보도 및 예술활동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공익적 목적의 표현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5조는 사망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까지 처벌할 수 있어, 현행 「형법」 체계와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형법」 제308조는 사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만을 처벌하는 반면, 안 제5조는 사망한 역사적 인물에 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그 인물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현행 사자명예훼손죄보다 처벌 범위가 확대됨.

역사적 인물은 연구, 교육, 언론보도 및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인물의 공과(功過) 또는 논쟁적 행적에 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특히 「형법」 제310조⁷⁾는 생존 인물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7)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넷째, 안 제6조의 보호대상 및 처벌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안 제6조는 사망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규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조문상 “역사적 인물”에는 생존 인물이 포함될 여지도 있는바, 생존 인물에 대한 모욕까지 포섭하는 경우에는 현행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보호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모욕 해당 여부는 표현의 전체 내용, 전후 맥락 및 발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역사적 인물은 공적 평가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비평·풍자·예술표현·언론보도 및 역사적 평가와,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멸적 표현을 구별하여야 함. 이에 따라 처벌대상을 악의적·반복적인 조롱·희화화 등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의 각 조문은 보호대상과 법정형에는 차이가 있으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유사·반복되어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에는 공통된 행위태양을 하나의 벌칙 조문으로 규정하고, 각 범죄유형 및 법정형은 항으로 구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간결성과 조문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국경일의 가치 수호와 독립유공자의 명예 보호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경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인물”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사실 적시까지 처벌대상으로 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와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법무부도 기본권 제한 가능성, 기존 형법체계와의 관계, 구성요건의 명확성 및 입법 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종합하면, 개정안은 국경일 관련 역사적 인물·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모욕행위에 대응하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형벌규정의 신설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과 행위태양을 구체화하고, 역사적 해석·평가 및 공익적 연구·보도·비평·예술활동 등과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모욕행위를 구별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과 처벌 제외 사유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38